



삼일회계법인

일반

상법 개정안 주요 내용과 이사회의 대응 (8월 25일 통과 개정안 반영)

삼일PwC 거버넌스센터

Online Library



상법 개정안 주요 내용과 이사회의 대응

What's new?

- 8월 25일: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를 담은 상법 개정안 통과
- 7월 3일: 이사의 주주 충실험무,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임시 3%를 적용, 전자주주총회 도입, 독립이사 제도 강화 등 주주 권리 보호를 주요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 통과(7월 22일 공포)

<8월 25일 국회 본회의 통과 상법 개정안>

1. 집중투표제 (공포 후 1년 유예)

- **필요성:** 현행 상법도 소수주주들이 이사 선임에 참여할 기회를 높여 대주주 중심의 의사결정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인 집중투표제를 허용함. 그러나 대부분의 기업이 정관을 통해 배제하고 있어 실질적인 주주 권리 보호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지 않음.

집중투표제는 1주 1 의결권 원칙의 예외로,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 각 주주가 1주마다 선임할 이사의 수와 동일한 수의 의결권을 가지는 제도임. 주주는 의결권을 후보자 1인 또는 수인에게 집중하여 투표할 수 있으며, 투표의 최다수를 얻은 자부터 순차적으로 이사에 선임됨!

- **개정 내용:** 대규모 상장기업에 집중투표제 의무화

현행	개정안
<p>상법 제542조의7(집중투표에 관한 특례)</p> <p>③ 제2항의 상장회사가 정관으로 집중투표를 배제하거나 그 배제된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 다만, 정관에서 이보다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할 수 있다.</p>	<p>상법 제542조의7(집중투표에 관한 특례)</p> <p>③ ---상장회사는 제382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----- -----배제할 수 없다.<단서 삭제></p>

- **기대 효과:** 소액주주들이 선호하는 후보에게 표를 몰아줌으로써, 대주주 견제와 소수주주의 의결권 강화
- **관련 리스크:** 선임 대상 이사 수 증가에 따라 집중투표제로 인한 경영권 리스크 및 이사회 내 불안정성 증가. 전문성이 부족하거나 대표성이 결여된 이사의 선임 가능성

이사회 대응 방안

- 적정한 수의 적격한 후보를 선임 대상으로 추천할 수 있도록 이사 후보 pool 관리
-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이사가 선임될 수 있도록, 이사 후보자에 대한 엄격한 자격 기준 수립
- 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이사 추천 절차 마련
- 이사 선임의 중요성과 기준에 대한 주주와의 소통 강화
- 이사 교육 프로그램과 평가 제도를 통한 이사회의 효과성과 책임성 제고

2.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(공포 후 1년 유예)

- **필요성:** 감사위원회가 회계 및 업무감사를 통해 경영진을 견제하는 본연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함. 현행 상법은 감사위원 중 1명은 의무적으로 분리 선출하도록 하고 있으나,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으로 구성되므로 과반수 의사결정 구조하에서 실효성이 낮음.

감사위원 선출 방식에는 분리 선출과 일괄 선출이 있음. 감사위원의 분리 선출 시 지분율이 3%를 초과하는 주주는 3%에 해당하는 의결권만 행사 가능하므로 최대주주의 영향력이 제한되는 반면, 일괄 선출의 경우 지분율의 제한 없이 이사를 일괄 선임하고 그 후에 감사위원을 선임하므로, 지배주주가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큰 구조임.

- **개정 내용:** 대규모 상장사의 경우, 분리 선출하는 감사위원을 2명 이상으로 확대

현행	개정안
제542조의12(감사위원회의 구성 등) ② 제542조의11제1항의 상장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. 다만, 감사위원회위원 중 1명(정관에서 2명 이상으로 정할 수 있으며,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인원으로 한다)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.	제542조의12(감사위원회의 구성 등) ② 제542조의11제1항의 상장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. 다만, 감사위원회위원 중 2명(정관에서 3명 이상으로 정할 수 있으며,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인원으로 한다)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.

- **기대 효과:** 감사위원회 독립성 제고, 소수주주가 추천한 후보자의 감사위원 선임 가능성 증가 및 대주주의 영향력 감소
- **관련 리스크:** 감사위원회 의사결정의 복잡성 증가, 감사위원회 및 지원부서 업무 증가

이사회 대응 방안

- 전체 주주의 기대와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감사위원 후보자 pool 확보
- 감사위원회에 배분된 리스크 감독 등 책임이 적절한지 재검토
- 감사위원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(내·외부 전문가 활용한 체계적 접근 필요)
- 감사위원회 보좌를 위한 감사위원회 지원 조직 보강 및 감사위원회 운영 효율화를 위한 정책과 절차 고도화
- 효과적인 감사위원회 회의 문화 정착

<7월 22일 공포 상법 개정안>

1.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(즉시 시행)

- **필요성:** 현행 상법은 회사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만 명문화. 자본시장법령 등 관련 법규 마련에도 불구하고 물적분할, 자회사 상장, 계열사 합병, 유상증자 등의 사안에 일반주주 이익 침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.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 해결 방안으로 제시.
- **개정 내용:** 이사에게 '회사'에 대한 충실의무와 함께 '주주'에 대한 충실의무를 부과

현행	개정안
상법 제382조의3 (이사의 충실의무)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. <신설>	상법 제382조의3 (이사의 충실의무 등)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. ②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고,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한다.

- **기대 효과:**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대원칙으로 제시하여 기업 경영 전반에 일반 주주의 권익이 고려되어야 함. 기업 거버넌스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증대되어 기업 가치 제고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.
- **관련 리스크:** 이해상충 가능성 고려와 이사의 배임죄 적용 리스크로 인해 이사회 의사결정 및 소송 증가로 인한 경영 부담 증가

이사회 대응 방안

- 주주간 이해 상충의 가능성 있는 거래의 파악과 검토를 위한 정책과 절차의 마련(주주 보호 방안 포함) 및 전사적 위험 관리 시스템에 반영 고려
- 정책과 절차에 따라,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의사결정
- 논의 과정과 결론 문서화. 필요한 경우 문서에 대한 법률 검토
- 복잡한 사안의 경우, 전문가 적극 활용
- 이사회 논의 내용과 의사결정에 대해 주주와 충분히 소통

2. 감사위원 선임시 최대주주 의결권 3% 제한 (공포 후 1년 유예)

- **필요성:** 현행 상법은 사내이사인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해서 3%률을 적용하고, 사외이사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에 각각 3%률을 적용하여 사외이사에 보다 완화된 요건을 적용
- **개정 내용:** 사외이사 감사위원을 선출시에도 3%률을 적용

현행	개정안
<p>제542조의12(감사위원회의 구성 등)</p> <p>④ 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는 상장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(정관에서 더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할 수 있으며, 정관에서 더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한다)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(최대주주인 경우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 그의 특수관계인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 한다)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</p> <p>(중략)</p> <p>⑦ 제4항은 상장회사가 감사를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에 준용한다. 이 경우 주주가 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.</p>	<p>제542조의12(감사위원회의 구성 등)</p> <p>④ _____</p> <p>_____ (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, _____).</p> <p>⑦ _____ <후단 삭제></p>

- **기대 효과:** 감사위원회 독립성 제고. 소수주주가 추천한 후보자의 감사위원 선임 가능성 증가 및 대주주의 영향력 감소.
- **관련 리스크:** 감사위원회 의사결정 과정의 복잡성 및 불확실성 증가. 감사위원회 및 지원부서 업무 증가.

이사회 대응 방안

- 전체 주주의 기대와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감사위원 후보자 pool 확보
- 감사위원회에 배분된 리스크 감독 등 책임이 적절한지 재검토
- 감사위원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(내·외부 전문가 활용한 체계적 접근 필요)
- 감사위원회 보좌를 위한 감사위원회 지원 조직 보강 및 감사위원회 운영 효율화를 위한 정책과 절차 고도화
- 효과적인 감사위원회 회의 문화 정착

3. 전자주주총회 (2027년 1월부터 시행)

- **필요성:** 현재 주주총회 결의를 위한 전자투표제는 활용되고 있으며 온라인 주주총회(현장증계주주총회)를 실시할 수 있음. 그러나 주주총회 출석으로 인정되지 않고 실시간 의결권 행사 및 질문이 불가함. 전자투표로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주들은 해당 주총 전날까지 직접 투표하거나 의결권 위임을 마쳐야 하는 불편함 존재.
- **개정 내용:** 전자주주총회 도입 및 일부 상장사는 의무화(현장 및 전자 주주총회 병행 개최)

현행	개정안
제364조(소집지) 총회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본점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지에 소집하여야 한다. <신설>	제364조(소집지와 개최방식) ① 총회는 정관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본점 소재지나 인접한 곳에 소집하여야 한다. ② 회사는 총회일에 주주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는 방식으로 총회를 개최한다.
제368조(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의 행사) ②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에는 그 대리인은 의결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 <신설>	제368조(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의 행사) ② _____ —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_____. 제542조의 14(전자주주총회) ① 상장회사는 정관으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의 일부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격지에서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 방식의 총회(이하 “전자주주총회”라 한다)를 개최할 수 있다. ②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. ③ 상장회사가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주주는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는 방식과 전자통신수단에 의하

<신설>

여 출석하는 방식 중 어느 한 가지 방식에 의하여만 총회에 출석할 수 있다.

(후략)

제542조의 15(전자주주총회의 운영 등)

① 상장회사가 제542조의 14에 따라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주주가 총회의 의사 진행 및 결의에 실시간으로 참가할 수 있도록 총회를 적정하게 운영하여야 한다.

② 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의 운영의 효율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주주총회를 관리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전자주주총회의 의사진행 및 결의에 참가하는 절차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

(후략)

- **기대 효과:** 주주총회 의사결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. 소액 및 해외 주주의 의결권 행사 접근성 제고.
- **관련 리스크:** 해킹, 데이터 유출, 시스템 장애 등 사이버 보안 리스크에 노출. 전자주주총회를 반영한 기업의 업무 규정 및 실무 변화.

이사회 대응 방안

- 전자주주총회의 운영의 효율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수립
- 전자주주총회 실시를 위한 정책과 절차 마련
- 주주총회 소집공고 정보의 충실회
- 일상적인 주주 소통 강화로 원활한 주주총회 사전 기반 마련

4. 독립이사 (공포 후 1년 유예)

- **필요성:** 사외이사는 경영진에 대한 감독과 견제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므로 독립성이 강조될 필요가 있음.
- **개정 내용(*):** 사외이사 대신 독립이사 명칭 사용. 독립이사 의무 선임 비율을 기준 이사 총수의 4 분의 1 이상에서 3 분의 1로 확대.
(* 종전의 사외이사는 개정에 따른 독립이사로 간주함. 다만, 상장회사는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개정 조항(제542조의 8 제1항)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함.)

현행	개정안
----	-----

제542조의8(사외이사의 선임)

① 상장회사는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하여야 한다. 다만,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는 3명 이상으로 하되,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.

제542조의8(독립이사의 선임)

① _____ 3
분의——독립이사(제382조제3항의 사외이사로서 사내이사, 집행임원 및 업무집행지시자로부터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이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——. _____
——독립이사는—.

(후략)

* 그 외 제400조 제2항, 제542조의4 제3항, 제542조의8, 제542조의11 제2항 제2호, 제635조 제3항의 '사외이사'를 '독립이사'로 변경 등

- **기대 효과:** 이사회 독립성과 독립이사의 역할에 대한 인식 제고
- **관련 리스크:** 이사회 구성 변경 및 신임 사외이사 후보 물색 필요. 이사회 구성원 변동에 따른 위원회 등 재정비.

이사회 대응 방안

- 적정한 수의 적격한 후보를 선임 대상으로 추천할 수 있도록 이사 후보 pool 관리
-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이사가 선임될 수 있도록, 이사 후보자에 대한 엄격한 자격 기준 수립
- 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이사 추천 과정 마련
- 이사 선임의 중요성과 기준에 대한 주주와의 소통 강화
- 이사 교육 프로그램과 평가 제도를 통한 이사회의 효과성과 책임성 제고

What's next?

- 이번 개정은 현 정부의 '공정경제' 정책의 핵심으로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기업 거버넌스 관행에 있어 광범위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
- 상법과 더불어,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일반 주주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는 거래에 대한 맞춤형 규제도 강화할 예정
- 기업은 이번 개정과 향후 제개정이 예상되는 법규를 고려하여, 회사의 정책과 절차 전반을 점검하고 재정비해야 함

Contact

- 02-709-0709
- kr_sgc@pwc.com